

의안번호	제 72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5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5
----------	-----

제출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청년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하여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 추가(안 제1조)
-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안 제3조)
-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9조)
- 청년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포상 근거 신설(안 제21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제외사유서 붙임)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제·사회·문화”를 “「청년기본법」에 따라 경제·사회·문화”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15세 이상 39세 이하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충청북도 청년위원회)”를“(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를 “심의·조정”으로,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을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명”을 “2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포상) 도지사는 청년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청년위원회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제·사회·문화</u>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청년기본법</u>」에 따라 <u>경제·사회·문화</u> -----</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u>15세 이상 39세 이하</u>의 사람을 말한다.</p> <p>2. ~ 6. (생략)</p>	<p>제3조(용어의 정의) -----</p> <p>1. -----<u>19세 이상 39세 이하인</u>-----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충청북도 <u>청년위원회</u>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p> <p>5. (생략)</p>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청년정책조정위원회</u> -----</p> <p>5. (현행과 같음)</p>

③·④ (생략)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청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충청북도 청년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경제·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제9조(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심의·조정-----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② -----
-- 심의·조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실·국장-----
-.

⑤ -----

- 2분의 1 -----.

1. ~ 3.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⑥ (현행과 같음)

⑦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제21조(포상) 도지사는 청년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라 한다): 2분의 1 이상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1.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사 유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법 내용 반영 등에 관한 일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3. 작성자 :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